

안전검사 대상 설비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차이,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세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의 의무를 놓치지 마세요!



제조·수입 단계의
'인증·신고'와
사용 단계의 '안전검사'는
다릅니다!

세 제도의 한눈에 비교!

구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적용 시점	제조·수입 전	제조·수입 전	사업장에서 사용 중
실시 주체	제조사 또는 수입자	제조사 또는 수입자	사업주
실시 횟수	최초 1회	최초 1회	법령에서 정한 주기마다
목적	제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의 안전성 확인	사용 중 설비의 안전성 유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절곡기
- 4 크레인
- 5 리프트
- 6 압력용기
- 7 롤러기
- 8 사출성형기
- 9 고소작업대
- 10 곤돌라

※ 규격 및 형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 2 산업용 로봇
- 3 혼합기
-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 6 컨베이어
-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8 공작기계
-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10 인쇄기

※ 규격 및 형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크레인
- 4 리프트
- 5 압력용기
- 6 곤돌라
- 7 국소배기장치
- 8 원심기
- 9 롤러기
- 10 사출성형기
- 11 차량탐재형 고소작업대
- 12 컨베이어
- 13 산업용 로봇
- 14 혼합기
-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 규격 및 형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실시주기

일반적인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최초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용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외)



다음 설비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재인증·재신고 필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기구라도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 프레스의 주요 안전장치 변경
- ✓ 사출성형기의 주요 구조 변경
- ✓ 혼합기의 구동방식 변경
- ✓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동

사업장에서 꼭 확인하세요!



- ✓ 우리 설비가 안전검사용인가?
- ✓ 제조 당시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했는가?
- ✓ 인증서 또는 신고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 최초 안전검사를 받았는가?
- ✓ 정기 안전검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 ✓ 건설현장용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인가?
- ✓ 설비를 개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 적이 있는가?
- ✓ 재인증·재신고 대상은 아닌가?

많이 하는 오해

- ✗ 안전인증용 받았으니 안전검사는 필요 없다? **NO!**
-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으니 안전검사도 받은 것이다? **NO!**
- ✗ 제조사가 다 해주니까 사업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NO!**
- ✗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도 기존 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NO!**

※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규격 및 형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